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 3.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6. 5. 9. ~ 5.20 (10일간), 오전 10시~오후 4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검사일자	대상지역	검사장소	검사일자	대상지역	검사장소
2016. 5. 9(월)	가좌4동 지역	가좌4동 (주)삼희축산주차장	2016. 5. 16(월)	가정1,2,3동, 청라동 지역	가정1동 사무소
2016. 5. 10(화)	가좌2,3동 지역	가좌2동 사무소	2016. 5. 17(화)	연희,심곡,공촌, 검암,경서,백석 동 지역	연희동 사무소
2016. 5. 11(수)	가좌1동 지역	가좌1동 사무소	2016. 5. 18(수)	청라1동 지역	청라1동 사무소
2016. 5. 12(목)	석남2,3동 지역	석남2동 사무소	2016. 5. 19(목)	청라2동 지역	청라2동 사무소
2016. 5. 13(금)	석남1동, 신현원창동 지역	석남1동 사무소	2016. 5. 20(금)	전지역 미수검 계량기	서구청 (후문 마실거리)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서에 저울을 사용 하는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등

3. 정기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 10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조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기업지원과 (☎ 032-560-4448)

